께雌ℳ노랑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6회 (02/18)

- 1.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다. ()
- 2.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. ()
- 3.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()
- 4. 조합의 설립 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)
- 5.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. ()
- 6.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, 이자는 2년으로 한다. ()
- 7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환지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. 다만,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)
- 8.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일반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. ()
- 9.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이나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. ()
- 10.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(地役權)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. 다만,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'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' 에 소멸한다. ()
- 11.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 ()
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. 건축물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음에 유의.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이다.
- 2. (X)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사항이다.
- 3. (O)
- 4. (X) 조합의 설립 시 동의는 면적 2/3와 총수 1/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5. (X) 승인 권한은 없다. 승인 권한자는 전부 다 지정권자로 보아도 무방하다.
- 6. (O)
- 7. (O)
- 8. (O)
- 9. (O)
- 10. (O)
- 11. (X)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이다.